

◆ 19 LEET 언어이해 1~3번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 오래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사회에 형성된 관습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견해이다. **관습이론**에서는 이런 관습을 확인하고 재천명하는 것이 법이 된다고 본다. 곧 법이란 제도화된 관습이라고 보는 것이다. 관습을 재천명하는 역할은 원시 사회라면 족장 같은 권위자가, 현대 법체계에서는 사법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입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제정법 또한 관습을 확인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민법의 중혼 금지 조항은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관습에서 유래하였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어긋나는 법은 성문화되어도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관습을 강화하는 법이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문화된 관습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법을 사회구조의 한 요소로 보고 그 속에서 작용하는 기능에서 법의 본질을 찾으려는 구조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관습이론이 법을 단순히 관습이나 문화라는 사회적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보는데 대해 규범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규범을 설명하는 오류라 지적한다. 구조이론에서는 교환의 유형, 권리의 상호 관계, 생산과 분배의 방식, 조직의 원리들이 모두 법의 모습을 결정하는 인자가 된다. 이처럼 법은 구조화의 결과물이며, 이 구조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책이 필요하기에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구조이론에서는 상이한 법 현상을 사회 구조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다.

1921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워진 모야브 형태의 정착촌 A와 키부츠 형태의 정착촌 B는 토지와 인구의 규모가 비슷한 데다, 토지 공유를 바탕으로 동종의 작물을 경작하였고, 정치적 성향도 같았다. 그런데도 법의 모습은 서로 판이했다. A에서는 공동체 규칙을 강제하는 사법위원회가 성문화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고 제재를 결정하였지만, B에는 이러한 기구도, 성문화된 규칙이나 절차도 없었다. 구조이론은 그 차이를 이렇게 ⑦분석한다. B에서는 공동 작업으로 생산된 작물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성이 높고 집단 규범의 위반자를 곧바로 직접 제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작물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A에서는 구성원이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규율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식적인 절차와 기구가 필요했다.

법의 존재 이유가 사회 전체의 필요라는 구조이론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과 제도로 유지되고 심화되는 불평등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갈등이론도 등장한다. 갈등이론에서 법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지배 집단이 억압 구조를 유지·강화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영위하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아동 노동 보호법을 만들려고 노력하여 20세기 초에 제정을 보았다. 이것은 문맹, 건강 악화, 도덕적 타락을 야기하는 아동 노동에 대한 개혁 운동이 수십 년간 지속된 결과이다. 이에 대해 관습이론에서는 아동과 가족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전통적 관습을 재확인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구조이론에서는 이러한 법 제정을 사회구조가 균형을 이루는 과정으로 설명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갈등이론에서는 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깊은 노동력에 근거하여 생존하는 소규모 기업이 대거 퇴출되었다는 점, 개혁 운동의 많은 지도자들이 대기업 사장의 부인들이었고 운동 기금도 대기업의 기부에 많이 의존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론 상호 간의 비판도 만만찮다. 관습이론은 비합리적이거나 억압적인 사회·문화적 관행을 합리화해 준다는 공격을 받는다. 구조이론은 법의 존재 이유가 사회적 필요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고, 갈등이론은 편향적인 시각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받는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습이론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억압적 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구조이론은 법이 그런 모습을 띠는 이유보다는 법이 발생하는 기원을 알려 주려 한다.
- ③ 구조이론은 규범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규범을 설명하기 때문에 논리적 문제가 있다고 공격을 받는다.
- ④ 갈등이론은 사회관계에서의 대립을 해소하는 역할에서 법의 기원을 찾는다.
- ⑤ 갈등이론은 법 현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전체로서의 사회적 이익을 유지하는 기능적 체계를 설명한다.

2. 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사법위원회가 지닌 사회 구조 유지의 기능이 사적 소유제의 도입에 따른 가정 간 빈부 격차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규명한다.
- ② B의 공동생활 방식은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비난과 제재의 가능성에 놓이도록 만들기 때문에 천명되지 않은 관습도 법처럼 지켜졌다고 파악한다.
- ③ A와 B는 사회의 조직이나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가졌다고 설명한다.
- ④ B와 달리 A에서 성문화된 규칙이 발전한 모습을 보고 사회 관행과 같은 비공식적 규율은 독립적인 생활 방식의 규율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 ⑤ B와 달리 A는 구성원이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규범을 체득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규율 내용을 명시하여야 규범을 둘러싼 갈등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이해한다.

3. **관습이론**에 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이론이나 갈등이론이 법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데 대하여 관습이론도 동의할 것이다.
- ② 상이한 법체계를 가진 두 사회에 대하여 구조이론이 조직 원리 상의 차이로 그 원인을 설명할 때, 관습이론은 관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를 반박할 것이다.
- ③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관행의 전환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는 관습이론의 논거를 강화할 것이다.
- ④ 과거 남계 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현재의 변화된 가족 문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 민법으로 폐지되었다는 분석에 대해, 관습이론은 관습을 재천명하는 법의 역할을 보여 준다고 하여 지지 할 것이다.
- ⑤ 혼례허식을 일소하기 위하여 1993년 제정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금지한 행위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지속되다가 1999년에 그 법률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에서, 성문화된 관습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주장은 힘을 얻을 것이다.

◆ 06 MDEET 언어추론 23~25번

[23~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정립되는 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성문법은 입법 기관을 통해 제정되어 문자로 확정되는 법을 말한다. '성문'이라는 특성상 일단 법률이 제정되면, 그것은 적용에서 고착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는 당연히 필요한 속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회적 토대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존의 법률이 규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현행 법제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빛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다시 그 법률이 개폐되거나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져 그 틈이 메워진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적시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이때 사회에는 구성원들을 규율하는 새로운 관행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형성된 관습이 사회 일반의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되면 관습법이라 불린다. 관습법의 이러한 개념은 법 체계에서 대체로 인정되며, 관습법은 불문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관습법의 효력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우선, 관습법이 법률과 내용을 달리할 때 그 법률을 실효(失效)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변경적 효력설). 이는 관습법이 국민의 법적 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규범이라는 면을 강조한다. 법률과 다른 관습법이 성립하였다면 그것은 성문법이 사회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의 필요에 응하여 자연히 발생하는 관습법을 실증주의적인 태도만을 고수하여 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옳은 자세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원천인 ㉠ 국민의 법적 확신을 가지고 저지하는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깔려 있지 않은 법률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관습법이 효력상 법률과 대등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곧, 성문법에 대하여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경적 효력설의 입장에서는, 성문법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엄마일 필요는 없고, 합리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률 규정을 문언(文言)에 충실히 이해하는 것이 법률 해석의 기본이라는 전제를 굳건히 유지하려는 주장도 강하다. 이 입장에서는 위 민법 규정을 법률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습법을 적용하라는 규정이라고 본다(보충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에서는 성문법과 충돌하는 관습법의 존재를 법질서의 결단이란 차원에서 파악한다. 곧,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발전하는 관습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법질서는 성문법과 충돌하는 관습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고, 일정한 요건 아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 민법의 입법자는 관습법이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고 한다. 이처럼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만을 부여하게 되면, 법률과 내용이 충돌하는 관습법은 논리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관습법은 성문법이 규율하지 않는 법적 문제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어느 편에 서든지 간에 어려운 문제는 관습법을 확인하는 일이다. 법전에 쓰여 있지도 않고 단순한 관행과도 구별되는 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는 관습법이 언제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제기한다. 이런 까닭에 관습법은 판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습법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역할에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A] 관습은 판결을 통해 관습법으로 승격되다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서 관습법을 인정

하는 경우, 그 사회적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된 시기로 소급하여 그 시점부터 그 관습법은 존재해 왔다고 본다. 성문법과 달리 관습법은 스스로를 수동적으로 드러내는 존재인 것이다.

23. 관습법에 관하여 변경적 효력설과 보충적 효력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은?

- ① 관습법의 경우에는 법률에 대하여 신법(新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법적 확신이 결여된 법률이 존재할 경우, 관습법으로 하여금 그 공백을 채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③ 관습법도 법이므로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인 법원은 재판할 때 관습법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
- ④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일견 관습법이라 부를 만한 것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 ⑤ 법률을 제정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황에 적응한 관습법은 그 법률에 저촉되더라도 개정될 때까지는 법 규범으로 기능한다.

24. <보기> 중 ㉠과 ㉡에 대하여 반론이 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 <보기>—
- | | |
|---|---|
| Ⓐ 법질서와 사회 관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관습은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다. | Ⓑ 사회 구성원들의 정당한 행위 양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습법 또한 법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
| Ⓒ 국회에서 대표되는 국민의 의사는 실제 국민의 의사와 다를 경우도 있으며, 이때에는 국민의 자율적 법 형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 법률의 내용과 충돌하는 관습법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의 기능을 훼손할 수도 있는 해석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

㉠에 대한 반론

- | | | |
|---|------|------|
| ① | ⑥ | ⓐ |
| ② | ⑦ | ⓐ, ⓒ |
| ③ | ⑥, ④ | ⓒ |
| ④ | ⑧ | ⓐ |
| ⑤ | ⑨ | ⓒ |

㉡에 대한 반론

25. [A]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견해는?

- ① 법 규범을 창설하는 공동체의 의사는 관습법을 통해 표출되며, 이는 사법 기관의 판단을 구속한다.
- ② 법률의 흥결이 발생하는 일은 드물고, 발생한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 성립된 법 원칙들로 규율할 수 있다.
- ③ 법을 정립하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가이므로, 국가가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 관습은 법이 될 수 없다.
- ④ 일정한 관행에 대하여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관습법의 존재 자체는 입법자가 인정한 사실이다.
- ⑤ 판례는 관습법으로서,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판결이 반복되어 이러한 판결이 언제나 내려진다는 신뢰가 자리잡았을 때 형성된다.

◆ 15-9평 A형 26~30번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여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다. 이후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1583~1645)는 중세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 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한편으로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그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이렇게 이루어진 법 원칙으로써 각국의 이해를 조절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⑦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이란 저서를 낳았다. 이 책에서는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신의 권리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그 핵심에 자리 잡았고, 이는 근대 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한 예로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도 자연법의 영향이 나타난다. 더욱이 프랑스 대혁명기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비판의 선봉에 서며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이를 바 ‘법률실증주의’이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겪게 되자,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

26.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실정법은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규범이다.
- ② 미국의 독립 선언에 법률실증주의가 영향을 주었다.
- ③ 서구의 근대적 법 체계에는 평등의 이념이 담겨 있다.
- ④ 중세의 신학에서는 신의 법에 인간의 이성을 관련시키지 않았다.
- ⑤ 프랑스 대혁명에서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② 국가 간에 전쟁을 할 때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범이 있다.
- ③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한다.
- ④ 각국의 실정법을 두루 통합하여 국제법으로 만들면 그것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현실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⑤ 종교의 차이로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법을 구성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자연법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의 권위만이 자연법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②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없는 근원적인 법 규범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 ③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대립하지만 인류를 변영으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 ④ 인간의 이성이 시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⑤ 자연법의 역할은 실정법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29. <보기>는 윗글을 읽고 쓴 글이다. ①~⑤ 중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법과 정의의 관계로 법을 바라볼 때 자연법 사상과 법률 실증주의는 서로 마주 보도록 양쪽 끝에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① 자연법 사상에서는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⑥ 법률실증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내용이 정의로운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⑦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뚜렷이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 법률실증주의를 따르면 실정법만이 법이 되므로, 무엇이 법인지 확정하는 일이 간편하다. 하지만 ⑧ 법률 실증주의에 따르면 심각하게 부당한 내용의 법률조차도 입법의 형식만 거쳤다면 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⑨ 법률실증주의는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와 함께 국민의 준수 의지라는 도덕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한다.

- ① ② ③ ④ ⑤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늠할
- ② 가져올
- ③ 기다릴
- ④ 떠올릴
- ⑤ 헤아릴

◆ 26-6평 4~9번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존립 이유로 ④ 살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가령 「대기환경 보전법」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 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 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왜해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⑥ 부딪힌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 되기도 ⑦ 어렵다.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⑧ 남는다.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 된다. ⑨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⑩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위의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 온 것은 아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나)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률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 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단, 임대인은 이 법률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⑪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 개념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 온 과정에 대해, (나)는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난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5. [A]를 바탕으로 ⑦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한다.
- ②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된다.
- ③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 ④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 규범 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 ⑤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줄어들어 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진다.

6.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 ③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겠군.
- ④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생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 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7. (나)를 바탕으로 할 때, ⑨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②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써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 ④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⑤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은 자신이 소유한 A 주택과 B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갑이 위의 두 법에 규정된, 생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생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생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①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생신되지 않겠군.
- ② 을이 생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겠군.
- ③ 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 ④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 ⑤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군.

9. 문맥상 ⑨~⑪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⑨: 그는 신문 기사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 ② ⑩: 아이가 한눈을 팔다가 친구와 부딪쳤다.
- ③ ⑪: 그가 사용한 전문 용어들은 너무 어렵다.
- ④ ⑫: 열심히 장사했더니 이익이 많이 남았다.
- ⑤ ⑬: 언니가 화분들을 모두 베란다에 내놓았다.

◆ 12년 6월 고2 B형 32~34번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사람에 의한 지배’는 결국 군주나 소수의 귀족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근대 법치주의자들은 사람에 의한 지배를 ‘법의 지배’로 바꾸려 했다. 이들은 기존의 법이란 군주의 자의적 명령에 불과하다고 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시민의 명령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으로 간주하였다.
- (나) 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보고 법을 제정, 집행, 관결하는 자를 각각 분리하였다.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행정은 이러한 법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며, 재판도 법에 따라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초창기 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확립된 법에 따른 법의 제정과 적용을 중시했기 때문에, 법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내용적 측면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나타났다.
- (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법의 내용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어떤 내용의 법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런 법치관은 의도적으로 인권을 짓밟는 비민주적·권위적 정권도 표방할 수 있다. 비민주적·권위적 정부가 기준의 법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감행하고자 할 경우 법 형식을 갖춰 의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법의 지배이지 좋은 내용의 법의 지배가 아닌 것이다.
- (라) 이 법치관에서는 법의 내용적 요소를 도외시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모두 정당한 법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법이 형식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엄격히 집행된다면 이러한 상태는 일반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지배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법치주의를 이처럼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낳는다.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서 모든 국민들을 공평하게 대우한 셈이므로 정의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법을 사회 구성원들이 정의롭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법치주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혼히 법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강조한, 법의 공평한 집행이 이처럼 명백하게 부정의를 낳는 경우를 ‘형식적 법치의 역설’이라고 한다.
- (마) 이렇게 본다면 합리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요소만으로는 ‘법의 지배’의 타당성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 또한 인간 존엄과 정의를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2.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근대 법치주의의 등장 배경
- ② (나): 초창기 법치주의의 특징
- ③ (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목적
- ④ (라):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
- ⑤ (마): 현대 법치주의의 지향점

33.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사례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사례 1] A국은 ‘옴’과 ‘멘옴’이라는 신분적 구별이 있다. ‘옴’은 자본력과 문화적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A국은 입법·행정·사법권을 분립시키고 있으나 이 기관들은 ‘옴’에게 독점되고 있다.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옴’은 ‘멘옴’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멘옴’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사례 2] B국의 ‘갑’은 추운 겨울 밤 이웃 사람인 ‘을’이 끈을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긴급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을’을 방치하고 집에 갔다. 결국 ‘을’은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B국의 사법부는,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①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A국에서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 ②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A국이 ‘멘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한다.
- ③ 형식적 법치주의자는 B국의 사법부가 ‘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 판결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 ④ 오늘날의 법치주의자는 A국이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멘옴’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 ⑤ 오늘날의 법치주의자는 B국이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

34. 위 글의 논지를 따를 때, ‘형식적 법치의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의견은?

- ① 법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한 법은 지켜야 한다.
- ② 법이 정의로운 목적과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지닐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한다.
- ③ 법이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부합하는 내용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법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 21년 9월 고2 20~25번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의 특질인 '최고규범성'은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된다.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법들은 헌법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여 받으며 존속을 보장 받으므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에 있는 법규법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법규법들에는 상위의 법규법인 헌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 수단이 있어 그 효력을 보장되지만 헌법은 그렇지 못하다. 즉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법과는 상이한 특징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헌법의 '자기보장성'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국가 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⑦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하에 실현된다. 예를 들면,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며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하여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따라서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⑧)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 고리로 하여 국가를 창설해 낸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그것을 담당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고 국가 기관을 조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헌법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권력제한성'을 통해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나)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헌법해석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으로는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론적 헌법관을 들 수 있다.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보는 관점으로, 권리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법규법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며 등장하였다. 국가는 강제적 법질서이고, 헌법은 실정 법질서에서의 최상위 규범이며, 국민은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이 법실증주의자

들의 인식이었다.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들은 존재적 요소인 도덕·자연법 등을 배제하고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학의 정확성과 엄격성,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산업화, 다원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라 변화된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정해진 법규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헌법제정권력의 근본적 결단으로 보는 관점으로, 주권자인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헌법은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힘을 가진 자, 곧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립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정치세력들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즉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며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하고 현실적 영향력만을 강조하여 국가를 권력 투쟁의 장이 되게 하고, 독재자의 결단이 곧 국민의 의사라는 논리로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의 등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합론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 통합을 위한 법질서로 보는 관점으로,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개신의 과정으로 보았다. 통합론적 헌법학자들은 적대적 정치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인식하며, 헌법이란 공감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통합론적 헌법관은 헌법을 완성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상황과 다원적 산업 사회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통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헌법의 규범성을 소홀히 하고, 통합과정을 너무 조화롭게만 보아 갈등의 요소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이란 어느 한 요소에만 환원시킬 수 없는 국가는 현상의 기본 질서이므로, 헌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의 효력이나 헌법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헌법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20. 다음은 (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④~⑦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짹지은 것은?

| | |
|-----|--|
| 공통점 | ■ 헌법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보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
| 차이점 | ■ (가)는 (나)와 달리 헌법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통해 종합적인 결충안을 도출하고 있다. ⑤ |
| | ■ (나)는 (가)와 달리 헌법과 관련한 여러 입장의 궁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밝히고 있다. ... ⑥ |

| | ④ | ⑤ | ⑥ |
|---|-----|-----|-----|
| ① | 적절 | 적절 | 적절 |
| ② | 적절 | 부적절 | 부적절 |
| ③ | 적절 | 부적절 | 적절 |
| ④ | 부적절 | 적절 | 적절 |
| ⑤ | 부적절 | 부적절 | 부적절 |

21. 자기보장성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헌법은 국가 기관의 행위를 일반 소송을 통해 제한한다.
- ②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의해 규범성이 인정된다.
- ③ 헌법은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내에 마련한다.
- ④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의 법규법에 의해 효력이 보장된다.
- ⑤ 헌법은 헌법에 의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은 스스로 제한한다.

22. ④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을 위한 강제 수단 마련
- ② 헌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입법부의 독자성 보장
- ③ 최고 규범을 판단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적 권위
- ④ 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권리의 법적 제재 수단
- ⑤ 헌법의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의지

23.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헌법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없다.
- ② 정해진 법규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
- ③ 존재적 요소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다원적 산업 사회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 ④ 국민을 법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헌법제정권력자로서의 국민의 의지를 설명할 수 없다.
- ⑤ 국가를 권리 투쟁의 장으로 보는 것으로는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는 도구로서의 헌법을 설명할 수 없다.

24. <보기>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④, 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2016헌바 등 병합)>

-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④ 심판대상조항은 구청장·군수·시장 등이 대형 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 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는 대형 마트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라 할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2014헌바3)>

-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⑥ 심판대상조항은 해고예고제도에서 월급 근로자 중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적용 예외로 규정한 것인데, 돌발적 해고 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다.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나, 이 역시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 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고려하면, ④를 ‘경제주체 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헌법의 권리제한성을 고려하면, ⑥와 관련된 ‘입법자의 권한’은 국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④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권리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⑥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통합론적 헌법관에 따르면, ④에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5. 문맥상 ⑦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우리는 명령을 따르며 급히 움직였다.
- ② 어머니를 따라 풍물 시장 구경을 갔다.
- ③ 나는 아버지의 음식 솜씨를 따를 수 없다.
- ④ 최근 개발에 따른 공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⑤ 의원들이 모두 의장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 16 사관학교 1차 A형 23~26번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본권은 인권 사상에서 유래되었지만 개념상으로 인권과 기본권은 구별된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생래적(生來的), 천부적(天賦的) 권리를 말하며,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 의미한다. 기본권 중에는 생래적 권리가 헌법에 수용된 것도 있지만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거나 구체화된다고 생각되는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환경권 등도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공권(公權)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기본권이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고, 따라서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작위(作爲)나 부작위(不作爲)*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헌법 질서를 형성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권리가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에 대하여서는 자연권설, 실정권설, 통합가치설 등으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자연권설(自然權說)에서는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은 시대나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여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고, 국가 권력의 침해와 간섭을 배제하는 기본권의 방어적, 저항적 성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정 권력자도 기본권 존중이라는 근본 규범에는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전(前) 국가적, 초(超)국가적인 천부적 자연권이라고 본다. 또한 헌법 상의 기본권 보장 규정은 그 헌법의 규정이 기본권을 창설(創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문서로 확인, 선언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정권설(實定權說)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은 실정권으로 파악한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도 그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서는 자연법상의 권리로 주장된 것이지만, 사회는 공동 생활체이므로 개인의 자유는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가 영역 안에서는 그 최후의 조정자가 국가인 이상 국가에 의한 국민의 자유의 제한, 조정은 필요 불가결하므로, 결국 자유권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는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권도, 그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헌법 또는 법률이 국가의 실정법인 이상 그것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정법상의 권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정권설에 의하면 기본권도 헌법에 규정되어야만 비로소 권리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의 기본권 보장 규정은 기본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본다.

통합가치설(統合價值說)에서는 질서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바라본다. 현실의 인간은 일정한 질서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 내의 자유와 권리를 뜻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통합가치설에서 기본권은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뜻하고 사회 공동체가 동화되고 통합되어 가기 위한 실질적인 ⑦ 원동력을 의미하므로, 본질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또한 헌법 질서 내의 국가 권력은 국민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의해서 창설되고,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에 의해 통제되고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통합가치설은 기본권의 국가 형성적 기능과 동화적(同化的) 통합 기능을 강조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의 정치적 성격을 중시한다.

* 작위, 부작위 : '작위'는 의식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나 동작이고,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일.

23.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기본권은 인권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② 기본권은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므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작위나 부작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자연권설에서는 기본권이 자연권으로서 가지는 방어적, 저항적 성격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④ 실정권설에서는 자유권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는 자유로 이해한다.
- ⑤ 통합가치설에서는 기본권을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24. 윗글에 근거하여 <보기>의 헌법 조문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① 자연권설에 의하면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권이 가지는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확인, 선언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 ② ‘제37조 ①’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과, ‘제37조 ②’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자연권설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③ ‘제37조 ②’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본권이 실정법상의 권리라는 실정권설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
- ④ ‘제10조’에 대해 통합가치설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가치 지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핵심적 가치로 하는 동화적 통합 질서를 마련하는 데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 ⑤ 통합가치설은 ‘제37조 ①’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가, 헌법적 질서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유와 권리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25. 윗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④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자연권설의 입장은 다시 절대적 자연권설과 상대적 자연권설로 나뉜다. 상대적 자연권설을 취하는 법 이론가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상과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구분하여, ④ 전자는 후자와 달리 실정권임을 인정한다.

- ①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은 모두 헌법에 규정된 실정권이기 때문이다.
- ②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 권력에 앞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③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은 모두 인간의 본성에 의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 ④ 생존권적 기본권은 시대나 국가가 달라도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자연권이기 때문이다.
- ⑤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26. ⑦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힘 ② 바닥 ③ 일으킴 ④ 본바탕 ⑤ 움직임

- 정답: 23.③ 24.⑤ 25.⑤ 26.②

◆ 05 MDEET(예비) 언어추론 35~37번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75년 4월 15일, 21세의 미국 여성 카렌 퀸란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9 일이 지난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카렌은 신경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성 클레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입원 초기부터 카렌은 혼수 상태에 빠진 채 인공 호흡기로 호흡을 했다. 카렌에게는 처음에는 입으로, 나중에는 비위관(鼻胃管)으로 물과 음식물이 공급되었다. 다섯 달이 지난 후 카렌에게 뇌졸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종류의 신경원 손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근육은 경직되고 수축되었으며, 체중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성 클레어 병원 측에서는 카렌이 회복될 확률이 백만 분의 일이라고 했다. 마침내 가족들은 카렌이 의식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카렌이 자신의 몸을 이런 상태로 계속 놓아 두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렌의 부모는 카렌이 이전에, 만약 끔찍한 일이 그녀에게 벌어지면 기계에 의존해서 식물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본당 신부는, 교황 비오 12세에 따르면 생명의 유지를 위해 인공 호흡기 같은 특별한 수단을 지원하는 것이 가톨릭 신자들의 도덕적 의무는 아니라고 했다. 마침내 카렌의 부모는 인공 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카렌을 죽게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카렌의 주치의였던 모스와 야베드는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의사들은 카렌의 부모가 나중에 변덕을 부려서 의료 과정 속에 휘말리게 될까 걱정했다. 그들은 카렌의 전원(轉院)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딸의 호흡기를 제거하기 위해, 카렌의 아버지 조셉 퀸란은 암스트롱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사건은 처음에 뉴저지 주 검인 법원(檢認法院)의 뮤어 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단순히 호흡기를 떼는 데 동의해 줄 수 있는 병원으로 카렌을 옮기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암스트롱은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택했다. 그는 카렌을 ‘죽게 내버려 두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⑦ 조셉 퀸란은 딸의 호흡기가 제거되기를 원한다고 밝히자, 뮤어 판사는 ⑧ 카렌의 부모가 더 이상 카렌의 후견인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암스트롱은 카렌을 죽게 내버려 둘 근거를 찾아서 제시해야만 했다. 처음에 그는 카렌이 법적으로 뇌사라고 주장했다. 뮤어 판사는, 그녀의 상태가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는 신경학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카렌의 뇌간(腦幹)이 아직 기능하고 있으므로, 뉴저지 주의 법에 따라 전뇌사(全腦死)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카렌의 주치의는 호흡기를 떼어 낸 의학적 전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모스의 변호사 포르지오의 변론 요지는, 타인이 평가한 카렌의 삶의 질에 기초해 카렌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비로운 죽음’으로 미화하려는 이 일이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 있음을 인정하고 진행되는 한, 나치의 가스실을 작동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명의 신성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는 말로 법정을 환기시켰다.

카렌이 입원한 지 거의 7개월이 지난 1975년 11월에 뮤어 판사는 카렌의 인공 호흡기를 떼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카렌의 의사가 서면으로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카렌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으며, 그녀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는 부모의 증언도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죽을 권리’는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카렌의 부모는 항소하였고, 상급 법원인 뉴저지 주 최고 법원은 1976년 1월에 카렌 부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미국 헌법이 보장한 프라이버시권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죽어 가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게서 생명 유지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을 허용할 정도로 넓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뮤어 판사의 판결과 더불어 의학적·법적·윤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안락사 찬반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5. 뮤어 판사가 판결의 근거로 채택한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

- ㄱ. 신경학자들은 카렌이 회복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증언했다.
- ㄴ. 카렌의 뇌간이 기능하고 있다.
- ㄷ. 문서화된 카렌의 유언이 없다.
- ㄹ. 가족들이 카렌의 평소 의사에 관해 증언했다.
- ㅁ. 헌법에 죽을 권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 ㅂ. 헌법에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조항이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ㅁ,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⑤ ㄷ, ㄹ, ㅁ

36. 다음은 카렌 퀸란 사건을 취재하고 분석한 기자의 수첩이다. 정확한 보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카렌의 부모 : 회복 불능 - 호흡기 제거를 요청.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신부의 유권 해석이 도덕적 부담감 덜어 준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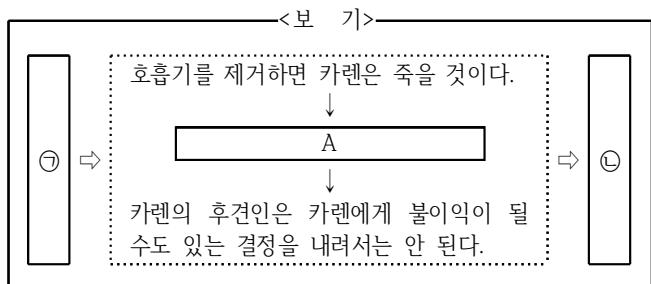
모스와 야베드 : 카렌의 회복 가능성 없다고 판단. 카렌의 전원을 허락하지 않음. 의료 과오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

암스트롱 : 죽게 내버려 달라. 전원 요청보다 어려운 소송 선택. 카렌을 뇌사로 주장한 것은 전략적 실수.

포르지오 : 호흡기 제거를 가스실에 비유. 선정적 변론. 카렌이 뇌사의 기준상 살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

최고 법원 : 프라이버시권 적용 → 기존 판결 번복. 기존 헌법 조항의 확대 해석 → 뇌사의 새 기준 제시.

37. 뮤어 판사가 ㉠을 듣고 <보기>와 같은 추론을 거쳐 ㉡에 도달하였다고 하자. 이때 A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카렌의 죽음은 카렌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 ② 카렌만이 호흡기의 제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카렌의 후견인만이 카렌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카렌 후견인의 이익은 카렌의 이익과 일치해야 한다.
- ⑤ 카렌의 부모라도 카렌의 후견인 자격을 갖지 못할 수 있다.

◆ 05 MDEET 언어추론 30~32번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996년 헌법재판소가 영화 검열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이 벼쳤기 이루어져 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영화 등급보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01년 다시 위헌 결정을 내리자, 그 대신 ‘제한상영가’ 제도가 2002년에 도입되었다. 제한상영가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친 경우에는 등급 분류를 보류하여 상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여 모든 영화에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함.” 한편 영상물등급 위원회는 “그 내용 및 표현 기법이 18세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일반 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에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일정 범위 내의 성 표현물에 대해서는 상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성 표현물이나 폭력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가능한 한 그 제작과 상영을 억제하고자 제한상영가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18세관람가 영화는 광고나 상영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반상영관에서 상영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를 비디오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할 수 없으며,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 또는 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수 없다. 물론 음란한 영화는 형법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음란하지는 않지만 지나친 성 표현물, 지나친 폭력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한 표현물의 상영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검열이라고 주장한다. 성인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행정 기관이 ‘일반상영관에서 자유롭게 보아도 좋은 영화’와 ‘제한상영관에서 약간 떳떳지 못한 기분으로 보아야 하는 영화’로 구분하는 것은 애매한 잣대에 근거한 ⑦ 후견적 간섭이라는 것이다.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인의 볼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 제작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행정 기관의 임의적 잣대에 따라 영화적 표현물을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도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음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해할 수 있는 성 표현물의 상영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란물은 아니지만 노골적인 성 표현물에 대하여 역겨움을 느끼는 성인이 있을 수 있는데, 18세관람가 등급은 허용하는 표현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와 같은 영화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을 보호할 수 없다. 둘째,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 중에서도 가치가 낮은 표현은 다른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소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셋째, 광고적 표현은 상업적 언론으로서, 다른 표현과 비교할

때 민주적 가치나 개인의 인격 완성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므로 그에 대한 규제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제한상영가 등급 자체는 합헌이지만, 제한상영가 등급이 영화진흥법상의 제한상영관 제도와 결합될 경우 위헌의 가능성에 있다는 견해도 있다. 현행 제한상영관 제도는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제한상영관 안에서만 게시하되 제한상영관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영화 제작자가 제한상영가 영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제한상영가 영화를 보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언론의 자유와 건전한 성도덕의 보호가 충돌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30.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공개된 장소에서의 음란물 상영은 금지되어 있다.
- ②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되고 있다.
- ③ 반사회적 내용의 유무는 영화 등급 분류 기준의 하나이다.
- ④ 18세관람가 영화와 제한상영가 영화의 관람 허용 대상은 다르다.
- ⑤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으로 성적 표현물의 허용 범위가 과거에 비해 넓어졌다.

31. ⑦만을 판단의 준거로 삼고 있는 것은?

- ① 간통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 ② 인공 임신 중절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 ③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 ④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의 신상을 국가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가?
- ⑤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한 기업의 환경 담당자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도 처벌해야 하는가?

32.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에 대한 세 견해의 논거를 표로 정리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견해 | 논거 |
|-----------------------------------|--|
| 위헌이라는 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형태의 검열이기 때문에 위헌이며, 성인의 볼 권리를 제한한다.○ 영화적 표현물의 상영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
| 합헌이라는 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적 표현물에 의한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성인을 보호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장소적 제한이 가능하다.○ 상업적 언론에 대해서는 폭넓은 규제가 인정될 수 있다. |
| 합헌이지만 제한상영관 제도와 결합되면 위헌일 수 있다는 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상영관 제도는 영화적 표현물의 광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

- 정답: 30.(④) 31.(②) 32.(④)

◆ 13-6평 47~50번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국정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근대 정치의 고전적인 딜레마가 내포되어 있다. 가령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의 행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조항에서 근거를 ① 찾으면 될 것이다. 이 주장에서와 같이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대표 방식을 ⑦ 명령적 위임 방식이라 한다.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이상 입법은 국회의원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회의원 각자가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방식을 ⑤ 자유 위임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구체적인 국가 의사 결정은 대표자에게 맡기고, 국민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한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갖는 이 대표자 선출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방식은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후자의 입장은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대표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⑥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4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견해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두 견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 ④ 두 견해의 공통점을 부각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48. <보기>의 상황에 ①, ②을 적용할 때, 타당한 것은? [3점]

<보기>

어떤 나라의 의회 의원인 A는 법안 X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소속 지역구 주민들은 법안 X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되리라는 우려에서 A에게 법안 X에 반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① ①: A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는 X에 찬성 할 수 있다.
- ② ②: A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 기권해야 한다.
- ③ ③: A는 반대하기로 선거 공약을 했다면 X에 반대해야 한다.
- ④ ④: A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 찬성 의견이라면 X에 찬성해야 한다.
- ⑤ ⑤: A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X에 찬성할 수 있다.

49. 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 위임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 ②의 도입은 선택적이다.
- ② 법률안 등을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는 ②에 해당 한다.
- ③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②를 도입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 ④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②에 해당한다.
- ⑤ ②의 도입은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50. ①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누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② 아버지는 이 약을 복용하고 생기를 찾았습니다.
- ③ 그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 ④ 형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했다.
- ⑤ 그들은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찾다가 화를 입었다.

◆ 15-9형 B형 26~28번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자치 단체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져 왔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 자치 단체 자체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화'와 '경영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둘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⑦ 민간화는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업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화를 통해 수용되는 주민들의 요구는 제한적이므로 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기업의 특성상 공익의 추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한계가 있다. ⑧ 경영화는 민간화와는 달리,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 감시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준의 편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가 체택하고 있는 간담회, 설명회 등의 주민 참여 제도는 주민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인데, 주민들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언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주민 참여 제도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A] [A]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각 개인들은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전체 주민의 의사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행정 담당자들도 정책 결정에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이 정책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될 것이다.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앙 정부와 대비해서 기술하고 있다.
- ②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 참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지방 자치 단체가 체택하고 있는 주민 참여 제도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했을 때의 효과를 말하고 있다.
- ⑤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책 결정 방식의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27. ⑦과 ⑧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은 기업의 이익을 중시하여 전체 주민의 이익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 ② ⑧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 ③ ⑦과 ⑧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④ ⑦과 ⑧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가 외부에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 ⑤ ⑦과 ⑧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에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8.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재원 확충에 따라 지역 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어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해당 정책에 대해 주민 투표를 실시했는데 주민의 80%가 투표에 참여 했다. 투표 결과 52.5% 대 47.5%로 찬성이 많았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하여 주민 간에 반목이 심해졌다.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상당수의 주민들은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주민 투표 제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주민들이 다른 정책에 대한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 ① 찬성이 더 많은 투표 결과를 보니,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고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견해가 대립하는 것을 보니,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보니,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다른 정책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는 것을 보니,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인 경우에도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